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87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박정현 · 이학영 · 복기왕
이연희 · 이광희 · 박균택
박홍배 · 문진석 · 박민규
이강일 · 염태영 · 김한규
양부남 의원(13인)

제안이유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중 115만 5448명 중 지방공무원 38만 7381명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36만 9504명), 경찰(14만 6044명), 소방(6만 6216명) 등은 각각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에 가입 가능함.

그런데 이 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8만 1420명과 입법부 공무원 4838명, 사법부 공무원 1만 8919명 및 중앙선관위원회 공무원 3175명 등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상황이기에 입법 미비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그 예로 국가직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기본 점수는 연 40만원으로 11년간 제자리인 반면, 지방직의 경우 기본점수가 200만원에서 시작되며 그 외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무주택자 지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둠(안 제3조).

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국가공무원과 공제회 임원 및 직원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함(안 제6조).

다. 공제회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함(안 제15조).

바.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및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국가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회 회원은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국가공무원
2.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낸 부담금의 반환을 정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이 임시회를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하며,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은 정관에 따른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임면(任免)한다.

제15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및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5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경영정보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외부 회계감사 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과 이사는 공제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국가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국가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준비)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의 최초 임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인건비, 임차료, 정보시스템 구축비, 기타 경상적 경비 등 공제회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